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책이주지의 종합관리 근거 마련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7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1) 정책이주지 현황 및 제정안의 배경	5
(2) 제정안의 기본 구조 및 주요 내용	11
(3) 총괄 검토	14
2. 주요 내용 검토	18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8
(2)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부터 제6조 까지)	24
(3)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정책의 추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및 제17조)	26
(4) 정책이주지 실태조사 및 정책이주지의 지정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3

(5) 정비이주지 관리·지원사업 및 순환이주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38
(6)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기록·연구(안 제18조)	44
(7) 재원의 확보 및 국고지원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45
(8) 부칙	4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38인

나. 발 의 일 : 2026. 3. 18.

다.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채 형성된 경우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안전취약·빈집 증가·생활SOC 부족 등 복합 문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주지 분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22개 도시 가운데 서울·성남·광주·부산·울산·창원·포항 등 7개 도시에서 총 47개 정책이주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부산이 18개 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체 정책이주지의 약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책이주지가 특정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됨.

부산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주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이 협소한 필지 구조, 부족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민간 중심의 자력 개발이나 개별 정비사업만으로는 정주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책이주지는 공익사업 및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와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지정 기준, 정비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정책이주지가 일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수준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정책이주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빈집·안전취약 등 긴급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순환이주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운동의 기록·연구 및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1) 정책이주지 현황¹⁾ 및 제정안의 배경

제정안의 관리 대상인 ‘정책이주지’는 현행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술연구 또는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이 종전의 거주민을 도심 부근이나 도시 외곽의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조성한 주거지를 의미하며,

“정책이주지”(부산광역시)와 아울러, “집단 이주 정착지”(서울특별시), “공해주민이주단지”(울산광역시) 또는 무허가 정착지 등 지역별로 고유의 행정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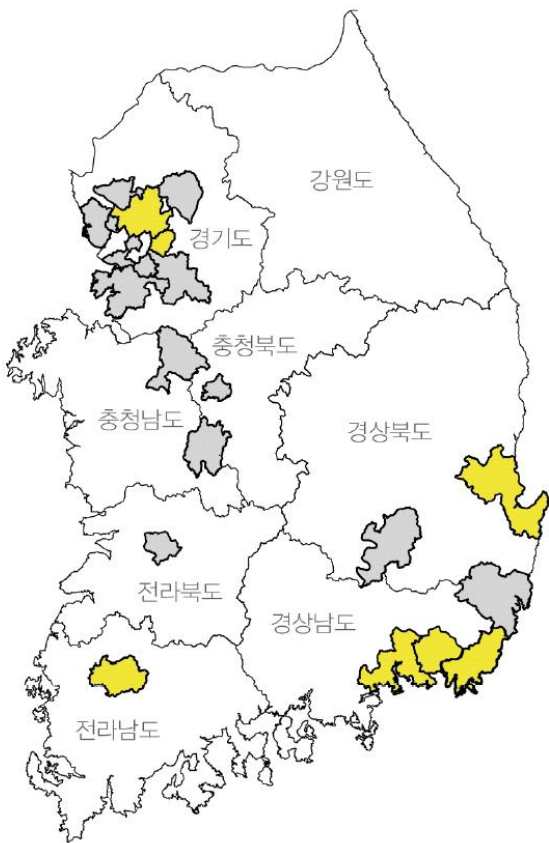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이주지 현황을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22개 도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성남·광주·부산·울산·창원·포항 등 7개 도시에 총 47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8년에

1) 정책이주지 현황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이영은(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적 집단이주지 현황 파악 및 유형화에 따른 재생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이주지 기초현황조사」, 2018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 2021
- 하남구, 「정책이주지의 주택 변화 연구 - 부산시 서동과 반송동 지역을 중심으로」, 2022

발간한 「정책이주지 기초현황조사」(이하 “기초현황조사”라 함)와 부산광역시에서 2021년에 발간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정책이주지 분포 현황 】

구 분(7개 도시 47개소)	행정 구역	형성원인		
		철거	공단조성	자연재해
	서울 3	백사(104)마을 희망촌 밤골마을		
	성남 14	신흥1지구 신흥3지구 태평1지구 태평2지구 태평3지구 태평4지구 수진1지구 수진2지구 중2지구 중4지구 금광2지구 은행1지구 상대원3지구 도환중2지구		
	광주 1			용봉마을 ※수해
	부산 18	개금3지구 반여1지구 반송1지구 반송2지구 용호2지구 용호4지구 용호7지구 연산1지구 연산2지구 연산3지구 강천1지구 장림1지구 장림2지구 장림3지구 서동지구		신평1지구 신평2지구 신평3지구 ※태풍 사라
	울산 8		다운지구 태화지구 삼호1지구 삼호2지구 신화마을 덕신1지구 덕신2지구 덕신3지구	
	창원 1	대원지구		
	포항 2		제내지구 문덕지구	

※ 자료: 「정책이주지 기초현황조사」(토지주택연구원, 2018)와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부산광역시, 2021)을 바탕으로 재정리

기초현황조사에서는 정책이주지 형성시기를 1955년부터 1988년까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철거민 및 무주택 난민 수용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사업(1955-1964)’을 시작한 시기부터 울산 공업단지 인근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울산·온산 공단 피해 이주 대책사업(1985-1988)’의 추진 시기를 아우르는 것으로,

정책이주지 중 23개소(49%)는 이른바 ‘광주대단지사업’²⁾이 추진된 1968년에 형성되었고, 형성 원인으로는 철거가 33개소(70%)를 차지하며, 지역별 분포로는 부산광역시 소재 18개소(38%) 및 성남시 소재 14개소(30%)로 부산·성남 지역에 소재한 정책이주지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이주지는 급격한 인구 밀집을 수용하기 위하여 충분한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조성되어, 건축 안전성 미흡 및 만성적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 왔으며,

「주택건설촉진법」(1972년 제정)에 따른 노후불량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1989년 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건축 특례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이주지 내 개별 주택의 개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 서울시가 시내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1968년에 마련한 신도시 계획의 하나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주택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12만여 명의 인구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로 이주시킨 정책임(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참고).

이러한 주택 정비가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보다는 개별 주택의 개량을 우선시하고 건폐율·용적률, 일조권 규제 등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

과도한 용적률로 인한 고밀(高密)주거,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주거환경,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건축물, 재난에 취약한 협소한 도로구조(소방차 진입 제약) 등을 유발하여 정책이주지의 거주환경 및 외부환경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한편, 정책이주지 내에서의 주거지환경정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업방식(전면 철거 후 신축 / 보존·개량 중심)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정책이주지 환경을 고려할 때 재개발 등 전면 철거 후 신축을 통한 정비방식(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주택건설 방식 및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정책이주지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지나치게 높고³⁾ 토지에 대한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⁴⁾도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고, 정비사업이 가능하더라도 정비사업 후 주민 재정착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이주지 내 적용 가능한 주요 주거환경정비 관련 제도 】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념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u>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u>의 주거환경 개선 ◦ <u>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u>	◦ 재개발: <u>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u>에서 주거환경 개선 ◦ 소규모주택정비: <u>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u>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장단점	◦ 공공주택건설(전면 철거) 방식 - 주거 환경 및 기반시설이 양호해지나,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 - 서민을 위한 부담가능주택 공급 곤란 등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가능	◦ 현지 개량 방식 -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 -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 체감 및 원주민의 개발 욕구 충족 곤란	◦ 보존 중심의 재생 방식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 ◦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 체감 및 원주민의 개발 욕구 충족 곤란 ◦ 경제적 능력이 낮거나 고령의 거주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 자력적 활동을 요구하는 자발적 공간정비 방식 추진 한계

※ 자료 : 각 법률 규정 및 참고문헌 등을 바탕으로 정리

3) 정책이주지는 형성 초기의 격자형 가로체계 하에 과소필지가 많고 공원녹지 비율이 매우 낮으며, 용적률 완화 등이 적용됨에 따라 일부 구역은 평균 용적률 약 360%에 달하는 주거지역의 허용 용량을 넘어선 고밀의 저소득층 주거지를 형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정책이주지 중 희망촌(서울) 등의 경우 주민이 토지의 소유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공유지에 무허가 건축을 한 사례 등이 다수 있음.

반면, 보존·개량 중심의 방식(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 개량 방식 및 도시재생사업 등)은 공동체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원주민의 입장에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이 열악한 정책이주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곤란하고, 저소득·고령층 중심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자발적 공간정비 방식 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소재 일부 정책이주지 등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⁵⁾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정책이주지는 주거환경개선구역⁶⁾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⁷⁾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주 및 생활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여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현행 법령상의 주거환경정비 제도로는 정책이주지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5) 서울 백사마을·밤골마을, 성남 신흥1지구·신흥3지구·태평3지구·수진1지구·상대원3지구 등

6) 부산시 소재 18개 정책이주지는 모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現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7)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구·산업(사업체)·노후건축물 비율 중 2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기초현황조사에서는 정책이주지 총 47개소 중 39개소(83%)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남 태평1지구·태평4지구, 울산 삼호1지구 및 부산 반여1지구, 신평2지구 등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바 있음.

제정안은 정책이주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2) 제정안의 기본 구조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명으로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총 21개 조문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정책이주지”와 “이주지환경개선사업”을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과 관련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며(안 제4조),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여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8) 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구성되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정책이주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지정·변경·해제하며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지환경개선사업 및 안전취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순환이주 지원을 통해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록·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 제정안의 기본 구조 】

총 칙	목적(제1조)	■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
	정의(제2조)	■ 정책이주지 : 공익사업 또는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지역 주민이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이주정착지·이주단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급한 주택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이주지환경개선사업 :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적용 범위(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하여 적용 ■ 이 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요건·절차·권리관계 등을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
	기본원칙(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제5조)	■ (국가) 시책의 수립·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계획적·지속적 추진

추진 체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제8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 청취 및 계획에 반영
	국회에 대한 보고 (제9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정책이주지 실태조사 (제1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정책이주지 지정 등의 고시 등(제1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
	정책이주지 관리대장 및 정보공개(제12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제1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차등 적용
지원 사업 등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지환경개선사업 및 안전취약 개선사업 등 추진 가능
	순환이주 지원 (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임시 거주 등의 방식으로 정책이주지 순차적 개발 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 등과의 연계·활용 (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연계·활용 가능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 (제17조)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 설치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기록·연구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록·연구 사업 등 추진 가능
보충 사항	재원의 확보 및 국고지원(제1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확보 노력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관계기관 협력 (제2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

(3) 총괄 검토

정책이주지는 전쟁, 산업화 및 도시화 등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하에
공익사업 또는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며
구성된 지역으로,

이주 당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조성되
었고, 이후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보다는 민간 주도의 개발행위가 중심이
되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 건물 노후화 및 취약도 증가, 공가율
상승 등의 복합적인 문제 및 슬럼화에 직면해 있으며,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
되었으나, 정책이주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추진 중단·지연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정책이주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정책이주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정부의 지정·확인,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관리·지원 체계 수립, 순환이주 지원을 통한 이주지환경
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 사회적 관심의 제고를 위한 기록·연구·기념

사업의 시행 및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 등을 규정하여,

정책이주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안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정안은 일반적인 낙후지역 정비 법률이 아니라 과거 국가 정책에 대한 사후적 책임의 이행 또는 보충을 위한 법적 제도로 이해되는데,

“정책이주”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제정안의 규율 대상이 과거의 정책이주로 한정되는 것인지 장래의 정책이주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발전소·항만·산업시설 등 사회적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 이주 및 이른바 환경난민·기후난민의 집단 이주⁹⁾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주의 자발성 및 정착의 합법성¹⁰⁾ 등에 따른 지정 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기초현황조사에 따르면, 풍수해(태풍·홍수 등)를 계기로 조성된 정책이주지가 4개소로 파악되고 있음(6쪽 참고).

10) 기초현황조사에 따르면, 정책이주지 47개소 중 43개소는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이주민이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토지·건축물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정착이 이루어졌고, 4개소(서울 백사마을·희망촌·밤골마을 및 울산 신화마을)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비중이 높은 차이점이 있음.

또한, 기초현황조사에 따르면 정책이주지는 부산·성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¹¹⁾되어 있어 제정안의 수혜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는바, 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정책이주지에 대한 개선·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책이주지 지원사업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¹²⁾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10쪽 각주 7)과 내용이 유사하고,

필요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¹³⁾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11) 참고로, 산업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주지가 다수 분포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2. 2. 22. 제정, 2013. 3. 22. 시행)을 통해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용자)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제2항¹⁴⁾ 등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시킨 정착지에 대한 별도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률에 따라 개선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책이주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검토함.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보조 및 용자 등) ① 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②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가 집단으로 정착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2. 정비구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주요 내용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주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또는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이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이주정착지·이주단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건설·공급한 주택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이주지환경개선사업”이란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관련 사업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관련 사업 바. 그 밖에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제정안의 규율 대상인 ‘정책이주지’ 및 ‘이주지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① 정책이주지(안 제2조제1호)

정책이주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¹⁵⁾ 또는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이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이주정착지·이주단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함)가 건설·공급한 주택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정안은 “정책이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책이주는 정책이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고, 제정안이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정책이주지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이주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정 집단의 주거권을 제약하며 주거를 지정한 행위라는 점 등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정책이주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이주”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¹⁶⁾하거나 정책이주지의 정의 규정에서 이주 행위의 법적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11조제1항¹⁷⁾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책이주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책이주지의 정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행위가 명시될 필요가 있고,

정책이주지의 정의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급한 주택단지”의 경우, “공익사업 또는 공공정책의 시행” 및 “지역주민의 집단이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16) 안 제18조제2항에서 “정책이주”라는 용어가 한 차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안 제18조제2항은 정책이주가 사회적 갈등 또는 사건의 성격을 지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제정안」

제18조(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기록·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정책이주가 사회적 갈등 또는 사건으로 표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7) 「제정안」

제11조(정책이주지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정책이주지 정의 규정 】

제정안의 정책이주지 정의		비고
㉠ 공익사업 또는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 지역주민이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이주정착지·이주단지 또는 <u>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급한 주택단지</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급한 주택단지”의 경우 ㉠과 ㉡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의적 해석 가능

② 이주지환경개선사업(안 제2조제2호)

“이주지환경개선사업”은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그 밖에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이주지환경개선사업”이라는 용어 외에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통칭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이는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과 제정안에서 정의되지 않은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안 제15조제1항·제2항) 및 “이주지 개선사업”(안 제15조제3항)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바,

유사 용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주지환경개선사업”,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및 “이주지 개선사업” 등의 용어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주지환경개선사업 및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용어 비교 】

이주지환경개선사업 (안 제2조제2호, 제14조제1항제1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안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안 제15조제1항·제2항) 이주지 개선사업 (안 제15조제3항)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사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u>빈집정비사업</u> 및 <u>소규모주택정비사업</u>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u>생활환경정비사업</u> ③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u>빈 건축물 정비 관련 사업</u>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u>정비사업</u>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기반시설 정비 관련 사업</u> ⑥ 그 밖에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을 위한 사업 ㉠ <u>이주지환경 개선사업</u> ㉡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화재·급경사지 등 안전취약 개선사업 ㉢ 정책이주지 내 빈집·공가·폐가 등 정비 및 공공활용에 관한 사업 ㉣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이주지 경관·커뮤니티 회복 사업 ㉥ 순환이주 및 임시거처 제공 등 지역주민 이주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의 또는 유형 미규정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¹⁸⁾에서 공익사업 시행 시 “이주정착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별도로 “정책이주지”를 규정하는 경우 용어 사용의 혼선이 우려되고,

정책이주지의 요건 중 “공공정책의 시행”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외에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이주정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발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 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 참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반으로 추진할 것 2. 안전·재난 취약요소의 개선을 우선할 것 3.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 4.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5. 역사적 경위 및 지역의 특성을 존중할 것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요건·절차·권리관계 등을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안 제3조 및 제6조는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제정안이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명시함과 아울러, 제정안이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법률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요건·절차·권리관계 등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는 기본원칙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이 ① 주민 참여와 지역공동체 회복, ② 안전·재난 취약요소의 개선 우선, ③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통합, ④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⑤ 역사적 경위 및 지역의 특성 존중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각 주체별 책무 규정으로, 국가로 하여금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규정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안이 구현하려는 원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3)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정책의 추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및 제17조)

제 정 안
제7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이주지의 현황 및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거·생활환경·안전 분야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17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1조에 따라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다른 이주정책 관련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시기,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 ① 정책이주지 정책의 심의·조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이주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및 제17조는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정책의 추진 및 환류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공청회등”이라 함)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며,

안 제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안 제17조**는 정책이주지 정책의 심의·조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적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이주지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한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추진체계의 명확성·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7조제4항**은 **안 제11조19)**에 따라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갖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분명한바, 정책이주지의 지정 단위(단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일 광역

19) 「제정안」

제11조(정책이주지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7조제3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이하 “협의·심의”라 함)를 거치도록 하고,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

절 차					비 고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 심의	▶	수립· 시행	일반 절차
	공청회등 필수 실시			▶		협의·심의와의 선후관계 불명확
기본계획 중요사항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 심의	▶	수립· 시행	공청회등 실시 의무 불명확
시행계획 수립	공청회등 필수 실시 그 외 사항은 미규정			▶	수립· 시행	협의·심의 절차 적용 여부 및 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 불명확

이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협의·심의 및 공청회등의 절차 간의 선후 관계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등의 실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등만이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바, 그 외의 협의·심의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시행계획도 기본계획과 공통적으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 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9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만 부여하고, 1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안 제9조**의 ‘추진계획’이 기본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별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한 것을 의미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17조제2항제3호**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성과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제1항**²⁰⁾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제정안」

제13조(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현황과 도입 필요기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며, 「도시재생법」 등에 따른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 등은 지방분권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정책이주지 실태조사 및 정책이주지의 지정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 정 안
제10조(정책이주지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이주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 및 범위 2.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노후도 및 화재·급경사지 등 안전취약에 관한 사항 3. 정책이주지의 기반시설 현황 4. 정책이주지 내 빈집·공가·폐가 등 현황 5. 정책이주지 내 취약계층 분포 현황 및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6. 정책이주지 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주민 수요 조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이주지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이주지 지정 기준에는 집단이주 기원, 기반시설 취약도, 정주환경 노후·불량 정도, 안전위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하려면 제17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제 정 안

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정책이주지의 위치·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이주지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책이주지 관리대장 및 정보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이주지의 현황, 사업, 예산, 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장(이하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의 서식, 세부적인 기재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의 공개 범위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주지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책이주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이주지의 현황, 사업, 예산, 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8년의 기초현황조사에 따르면, 정책이주지 내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이 66.9%에 달하고, 구조적 안전성이 높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사용한 비중이 21.6%에 불과하며,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이 65.9%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높고 안전에 취약하며, 기반시설 부족 및 고령화 등에 따른 공가율·폐가율 증가 등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이주지별로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의 편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취약도, 정주환경 노후·불량 정도 및 안전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정책이주지를 지정·변경·해제함으로써,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책이주지 내 건축물의 경과년도·구조 및 정책이주지 경사도 】

경과년도		건축물 구조		경사도	
10년 이하	4.14%	벽돌구조	31.24%	평지	34.1%
10년 초과~ 20년 이하	7.73%	블럭구조	19.07%	경사지	65.9%
20년 초과~ 30년 이하	38.23%	철근콘크리트구조	21.57%		
30년 초과	28.68%	기타구조	28.12%		
기타(누락)	21.22%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이주지 기초현황조사」, 2018

한편, **안 제11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이주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하려면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이주지의 ‘해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정책이주지의 해제 시에도 통일적으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17조제2항제2호²¹⁾**는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책이주지의 ‘해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제3항**에서도 정책이주지의 해제에 대하여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역에 편중된 정책이주지의 분포 현황(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2개 중 7개 도시에 소재) 등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 및 관리 대장의 작성·관리 주체로는 지방정부가 적합하고,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이주정착지를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주지의 지정·변경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이주대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21) 「제정안」

제17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 ① 정책이주지 정책의 심의·조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정책이주지 지정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정비이주지 관리·지원사업 및 순환이주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 정 안
제14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지환경 개선사업 2.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화재·급경사지 등 안전취약 개선사업 3. 정책이주지 내 빈집·고가·폐가 등 정비 및 공공활용에 관한 사업 4.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5.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이주지 경관·커뮤니티 회복 사업 6. 순환이주 및 임시거처 제공 등 지역주민 이주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우선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 범위·방법 및 절차, 우선순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순환이주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이하 “순환이주”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순환이주 방식으로 이주지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주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사업 등과의 연계·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

제 정 안

업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업 절차의 합리적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연계·활용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순환이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²²⁾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은 정책이주지의 물리적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커뮤니티 회복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을 포괄하며,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 정비, 노후화·고령화 등에 따른 슬럼화 우려 방지, 역사성의 보존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재생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이주’ 방식으로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²³⁾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²⁴⁾과 유사하게 사업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

23)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한편, **안 제14조제2항²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우선 활용하여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제3항²⁶⁾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의 규정은 유사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두 조항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 「제정안」

제14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우선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26) 「제정안」

제16조(도시계획시설사업 등과의 연계·활용)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연계·활용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정책이주지 개선사업”과 같은 **조 제3항**의 “이주지 개선사업”은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구체적인 유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또는 “이주지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내용 중 이주지환경 개선, 빈집 등 정비, 공동이용시설·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커뮤니티 회복, 임시거처 제공 등 상당 부분이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²⁷⁾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어, 현행 「도시재생법」²⁸⁾ 및 「도시정비법」²⁹⁾ 등

27)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재생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등 포함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용자)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사업 추진 및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순환이주 지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³⁰⁾에서 순환 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철거형 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연계하여 이주 지원을 제공한 사례³¹⁾가 있어, 현행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1) (부산 동구 도시재생사업, 2020년 선정) 부산 쪽방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순환 이주 지원

(6)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기록·연구(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기록·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정책이주가 사회적 갈등 또는 사건으로 표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제14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록·연구의 방법 및 절차, 지원의 기준·절차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이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에 대하여 제공하는 지원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정안은 “정책이주지”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책이주”의 명확한 개념을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8조제2항의 “정책이주”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재원의 확보 및 국고지원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19조(재원의 확보 및 국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정책이주지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업의 연계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안 제1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안 제20조는 정책이주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1조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각 규정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21조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부칙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위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제정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기와 실태조사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³²⁾.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법률 제8200호, 2007. 1. 3.>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8200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 등 관련 세부기준, 실태조사 항목,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우선순위 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